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IBK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ibk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1년 03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년 02월 0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총액] [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 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리(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명 칭	IBK 그랑프리 한국대표 증권 투자신탁[주식] (58351)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8352	93010	58501	A3343

2. 모집예정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으로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습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IBK자산운용(주)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국내주식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 채권	40%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함),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는 제외)
3.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함)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30%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10.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2.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

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각 업종대표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며, 국공채 및 유동성자산 등에 일정부분을 투자하여 안정적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주식 또는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KRX100 × 100%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서 상기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 (1) 업종내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및 시장점유율 상위종목을 1차적으로 선정합니다.
- (2) 최초 포트폴리오 구성시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투자비율을 결정하나, 출하재고비율, 매출액증가율등의 벨류에이션 분석을 통해 산업 trend가 향후 1~3년 우상향 추세가 예상되는 업종의 경우 비중을 확대합니다.
- (3) 상기 분석을 통하여 업종내 핵심투자종목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델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예시>

업종	업종비율	종목명	Market Cap. (%)	Portfolio Weighting	업종	업종비율	종목명	Market Cap. (%)	Portfolio Weighting
운송	1.59	대한항공	0.4	2	유통	6.71	신세계	1.3	3
		한진해운	0.3	1			현대백화점	0.3	1
조선기계	5.17	현대중공업	1.2	3	미디어	1.00	롯데쇼핑	1.7	2
		대우조선해양	0.8	2			제일기획	0.1	1
		삼성중공업	0.8	3			국민은행	4.0	5
자동차	6.21	현대차	2.7	5	은행	13.71	신한지주	2.5	4
		현대모비스	1.0	2			우리금융	2.3	2
전력가스	4.84	한국전력	3.9	3			대구은행		대구은행
		한국가스공사	0.4	2	보험	3.28			삼성화재
반도체	19.08	삼성전자	14.0	15			코리안리	0.2	1
		하이닉스	2.2	4	동부화재	0.3	1		
디스플레이	5.46	LG필립스LCD	2.0	3	증권	3.07	삼성증권	0.5	1
		LG전자	1.5	1			한국금융지주	0.3	1
화학	7.02	삼성SDI	0.5	1	의복	0.55	한성	0.1	1
		SK	1.3	2			게임인터넷	0.20	NHN (코스닥)
금속	5.26	LG화학	0.4	1	음식료	4.15			CJ
		POSCO	3.2	5			하이트맥주	0.3	1
제지	0.47	호남석유	0.3	1	통신서비스	5.81	KT	1.9	2
		현대제철	0.5	1			SK텔레콤	3.0	4
건설	5.01	고려아연	0.2	1	계	100.00		68.3	100
		한솔제지	0.1	1					
제약	1.41	GS건설	0.5	1					
		현대건설	0.8	1					
		한미약품	0.1	1					

주1) 위의 표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참고자료로서, 실제 운용시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투자대상 및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과 리스크 관리, 운용과 매매분리, 사전 운용지시 및 모델 포트폴리오 복제시스템을 통하여 독립된 위험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 및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위험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오후 3시이후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사항’의 ‘11. 매입,환매,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므로 주식시장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해당 투자신탁 투자대상국가의 일본의 금융시장의 경기 회복에 따른 주식등의 가치의 상승 및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60% 이상인 증권투자신탁 ^{주)}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이상인 경우 ^{주)}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신탁계약상 주식 편입 비율 60% 이상)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초과 ~ 60% 미만인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20% 미만인 경우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신탁계약상 30% 이하인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최대손실 가능비율이 투자원금 대비 10% 미만인 경우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원금보존추구형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MMF

*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당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IBK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주식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신동걸	1967	상무	31개	8,778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 한국운용(98~07:주식운용) - IBK 자산운용(07.02~09.08) - KTB 자산운용(09.09~12.01)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투자실적 추이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설정일 이후
	(10.04.01~11.03.31)	(09.04.01~11.03.31)	(08.04.01~11.03.31)	(06.07.10~11.03.31)
종류 A	33.77	41.44	15.22	14.34
종류 B	37.18			37.18
종류 E	34.53	42.24	15.89	15.27
투자신탁전체	35.75	43.53	16.98	16.09
비교지수*	27	33.19	8.68	11.55

* 비교지수 : KRX100 × 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임.



(2) 연도별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0.04.01~ 11.03.31)	(09.04.01~ 10.03.31)	(08.04.01~ 09.03.31)	(07.04.01~ 08.03.31)	(06.07.10~ 07.03.31)
종류 A	33.77	49.55	-23.54	15.02	7.13
종류 B	0	0	0	0	0
종류 E	34.53	50.4	-23.07	15.69	8.62
투자신탁전체	35.75	51.76	-22.3	16.76	8.34
비교지수*	27	39.68	-27.64	16.11	12.49

* 비교지수 : KRX100 × 100%

*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임.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판매회사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선취판매수수료	1%	0.5%	1%	-	납입금액 기준
환매수수료	-	-	-	70%	90 일 미만 이익금 기준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보수구조	종류 A	종류 B	종류 E	종류 I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납입금액 5 억이상	인터넷 가입		
집합투자업자보수	0.74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750	0.750	0.150	0.03	
신탁업자 보수	0.04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기타 비용	0.0031	0.0031	0.0026	0.0026	사유 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1.5531	1.5531	0.9526	0.8326	-
증권 거래비용	0.5137	0.5137	0.0174	0.0174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매매수수료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집합투자기구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163	514	901	2,051
종류 B	159	501	879	2,002
종류 E	100	315	552	1,258
종류 I	87	273	475	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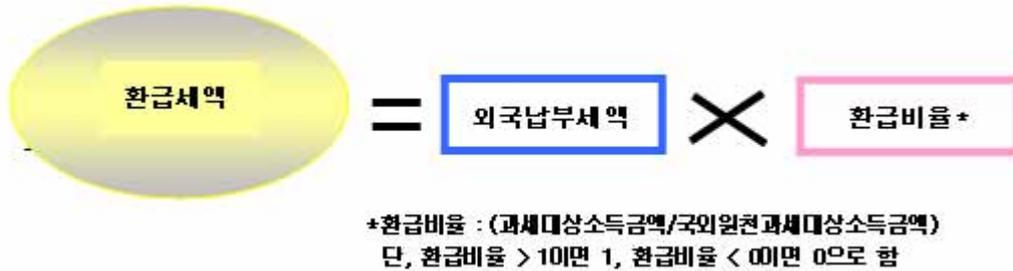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

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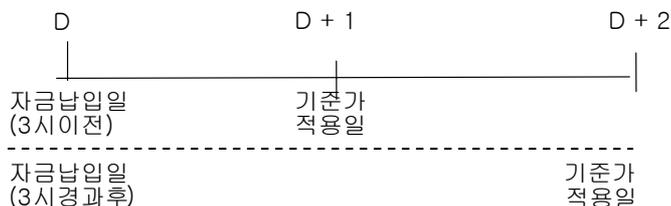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A : 납입금액 및 납입방법에 제한이 없는 경우
- 종류 B : 납입금액이 5 억원이상인 경우
- 종류E :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
- 종류 I : 투자자가 법 제 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인 경우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③ 선취판매수수료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합니다.

- 종류 A : 1%
- 종류 B : 0.5%
- 종류 E : 1%
- 종류 I : 해당사항 없음

④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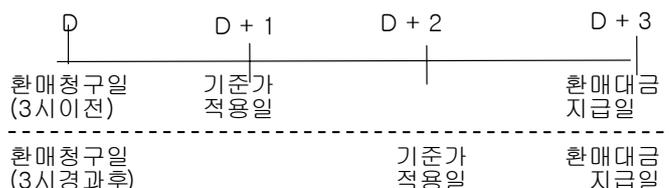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③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지급시기)
종류		종류A,B,E	종류 I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④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⑥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⑦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⑧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4.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IV 요약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5기 반기	제4기	제3기
	11.01.09	10.07.09	09.07.09
운용자산	19,401,033,419	12,501,091,288	14,491,157,155
증권	18,871,780,250	11,510,885,450	13,857,254,750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529,253,169	990,205,838	633,902,405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242,719,585	68,808,689	339,973,109
자산총계	19,643,753,004	12,569,899,977	14,831,130,264
운용부채	0		
기타부채	387,439,049	201,437,709	125,240,270
부채총계	387,439,049	201,437,709	125,240,270
원본	9,874,211,186	7,966,805,393	12,537,330,951
수익조정금	5,991,741,301		
이익잉여금	3,390,361,468	4,401,656,875	2,168,559,043
자본총계	19,256,313,955	12,368,462,268	14,705,889,994
손익계산서			
항 목	제5기 반기	제4기	제3기
	10.07.10~11.01.09	09.07.10~10.07.09	08.07.10~2009.07.09
운용수익	3,418,835,599	4,009,172,877	771,265,079
이자수익	6,142,429	9,023,970	16,634,047
배당수익	141,834,780	149,631,130	152,133,150
매매/평가수익(손)	3,270,858,390	3,850,459,566	602,322,978

기타 수익		58,211	174,904
운용비용	28,474,131	37,493,002	6,003,117
관련회사 보수			
매매수수료	575,570	1,777,785	2,919,308
기타비용	27,898,561	35,715,217	3,083,809
당기순이익	3,390,361,468	3,971,679,875	765,261,962
매매회전율	69	252	314